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 4

- 이란 핵협상 포괄적 합의 : 전망과 시사점

주요 동향

◇ OECD 경기선행지수, 전월보다 소폭 하락

※ OECD 경기선행지수 : 100.31('14.11월) → 100.31(12월) → 100.31('15.1월) → 100.29(2월)

-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 왔던 영국($\Delta 0.11$), 미국($\Delta 0.14$), 캐나다($\Delta 0.13$)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 견인

※ 미국 : 100.3('14.11월) → 100.2(12월) → 100.1('15.1월) → 100.0(2월)

- 비 OECD국가인 브라질($\Delta 0.14$), 중국($\Delta 0.05$) 역시 하락

※ 중국 : 98.5('14.11월) → 98.5(12월) → 98.5('15.1월) → 98.4(2월)

- 반면 유로존(0.11 \uparrow) 국가들은 지속적인 개선을 나타내고 있으며, 일본(0.10 \uparrow)과 한국(0.19 \uparrow)도 소폭 상승

※ 유로존 : 100.5('14.11월) → 100.5(12월) → 100.6('15.1월) → 100.7(2월)

※ 한국 : 101.2('14.11월) → 101.5(12월) → 101.8('15.1월) → 102.0(2월)

◇ 일본, 2월 경상수지 흑자 '11년 9월 이후 최고치 기록

- 2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(614억엔) 및 시장전망치(1조 1,960억엔)를 크게 웃도는 1조 4,401억엔으로, 작년 7월 이후 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지속

-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 및 엔저 등에 따른 자동차, 전자부품 수출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 주요인

※ 경상수지(억엔): 4,402('14.11월) → 2,259(12월) → 614('15.1월) → 14,401(2월)

※ 무역수지(억엔): -6,312('14.11월) → -3,821(12월) → -8,642('15.1월) → -1,431(2월)

※ 소득수지(억엔): 12,726('14.11월) → 10,670(12월) → 14,129('15.1월) → 18,622(2월)

주요 동향

◇ 미 연준, 위원들간 이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 불투명 확대

- 일부 위원들은 안정된 고용환경 등 양호한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6월부터 통화정책 정상화 주장
- 반면, 인플레이션율을 증시하는 측에서는 최근 유가하락과 미달러화 강세 등이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까지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

※ 실업률(%) : 5.6('14.12월) → 5.7('15.1월) → 5.5(2월) → 5.5(3월)

※ 인플레이션율(전년 동기대비, %) : 1.3('14.11월) → 0.8(12월) → -0.1('15.1월) → 0.0(2월)

- WSJ의 서베이 결과, 전문가중 65%는 9월부터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, 18%는 6월로 전망

◇ 그리스, 국채발행 통해 IMF 부채 예정대로 상환

- 그리스는 IMF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의 일부인 4억 6천만 유로(약 5,250억원)를 9일 예정대로 상환
- 6개월 만기 국채발행을 통해 총 11억 3,750만 유로를 조달해 상환
- 5월중 IMF 채무(7억 7,900만 유로) 상환, 7월중 유럽중앙은행(ECB) 채무(35억 유로) 상환 등이 남아 있어 그리스 디폴트 위기는 상존한다는 평가

◇ 무디스, 인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'안정적(Stable)'에서 '긍정적(Positive)'으로 상향(4.9일)

- 풍부한 노동력, 높은 저축과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,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
-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'Baa3'로 유지

① 외환시장

| 구 분 | '14년말 | '15. 4. 3 | '15. 4. 10 | 전주비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₩/US\$ | 1,088.5 | 1,092.7 | 1,092.7 | - |
| ₩/100¥ | 910.12 | 913.2 | 907.0 | △6.2 |
| CNY/US\$ | 6.2020 | 6.1970 | 6.2091 | 0.0121 |
| ¥/US\$ | 119.09 | 119.6 | 120.47 | 0.87 |
| US\$/€ | 1.2174 | 1.0880 | 1.0668 | △0.0212 |

② 채권시장

| 구 분 | '14년말 | '15. 4. 3 | '15. 4. 10 | 전주비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한국 국고채(3년) | 2.10 | 1.71 | 1.71 | - |
| 미국 국채(10년) | 2.17 | 1.84 | 1.95 | 0.11 |

③ 주식시장

| 구 분 | '14년말 | '15. 4. 3 | '15. 4. 10 | 전주비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한국 KOSPI | 1,915.59 | 2,045.42 | 2,087.76 | 42.34 |
| 미국 DJIA | 17,823.07 | 17,763.24* | 18,057.65 | 294.41 |

* 15.4.2자 기준(4.3은 성금요일로 휴장)

④ 해운시장

| 구 분 | '14년말 | '15. 4. 3 | '15. 4. 10 | 전주비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BDI 지수* | 780 | 588 | 580 | △8 |
| HRCI 지수** | 538.1 | 652.7 | 671.6 | 18.9 |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⑤ 유가

(US\$/ 배럴)

| 유 종 | '14년말 | '15. 4. 3 | '15. 4. 10 | 전주비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WTI유 현물 | 53.27 | 49.14* | 51.64 | 2.50 |
| Brent유 현물 | 57.33 | 54.95* | 57.87 | 2.92 |
| 두바이유 현물 | 60.11 | 54.82* | 55.98 | 1.16 |

* 15.4.2자 기준(4.3은 성금요일로 휴장)

2

이란 핵협상 포괄적 합의 : 전망과 시사점

- ◆ 이란과 UN 안보리 5개국 및 독일(P5+1) 간에 진행되어 온 이란 핵협상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였는 바,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

1. 이란 핵개발 동결협상 포괄적 합의

□ 협상시한의 거듭된 연장 끝에 마침내 합의

-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(P5+1)은 지난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담에서,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'포괄적 공동행동계획'(JCPOA)¹⁾ 수립에 최종 합의
 - 앞서 양측은 '13. 11. 24일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, 미국, EU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데 합의, '14. 1. 20일부터 6개월간 對이란 경제제재 일부 완화 (<참고자료 1> 참조)
 - 양측은 잠정시한(7. 20일) 전까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협상시한을 11월 24일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7개월 재연장하여 '15. 3월 말까지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금년 6월 말까지 세부내용에 합의기로 결정

□ 금년 6월 말까지 세부적, 기술적 합의를 위한 협상 계속

- P5+1과 이란은 JCPOA를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,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
 - P5+1과 이란 간의 협상 지속은 UN 안보리가 보증

1)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.

- JCPOA에 의하면 후속 협상이 6월 30일까지 타결될 경우 먼저 UN 제재가 해제되고, 이후 미국·EU의 제재도 해제될 예정
 - 단,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결과 이란이 합의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, 對이란 제재는 다시 발효될 수 있음

2. 포괄적 공동행동계획(JCPOA)의 세부 내용

□ 이란의 원심분리기 보유대수와 우라늄 농축시설

-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가동 중인 19,000기의 원심분리기 중 1세대형 초기 모델 6,104기만 남기고, 나머지는 가동 중단
 - 6,104기 중 5,060기는 Natanz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10년 간 상업용 (핵연료봉 제조용) 생산에 사용되며, 1,044기는 Fordo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됨
 - 원심분리기 감축은 breakout time(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때부터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까지의 소요시간)을 늘리기 위한 조건
 - ※ 초기 모델 원심분리기 5,000기 수준을 유지하면 이란의 breakout time은 1년 정도가 되며, 이는 미국이 요구해온 수준과 거의 일치
- 이란은 향후 15년간 ① 저농축 우라늄(LEU) 재고를 현재의 10톤에서 0.3톤의 농도 3.67% LEU로 감축하고, ② 농도 3.67%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으며, ③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지 않음
 - ※ 농도 3.67% 이상의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생산용으로 전용 가능

□ 이란 Arak 중수로의 설계 변경

- 이란은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Arak 중수로를 재설계 및 재건설하고, 기존 원자로를 폐기하여 국외로 반출하며, 핵연료봉도 파괴 또는 제거
- 또한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로 가동 기간(약 30년) 동안 국외로 반출하고, 핵연료 재처리 연구·개발(R&D)을 무기한 중단

□ 협상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타결 기대

- 이란의 핵활동 제한의 실제 이행방법과 제재해제의 시점 및 조건은 세부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, 향후 세부 협상에서도 양측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
- 그러나 이란 핵협상은 시리아,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다른 주요 문제와도 연계되어, 세부 협상의 결렬시 양측 모두 감수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의 궁극적, 최종적 타결 기대
 - 미국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코자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려 하나, 이를 위해서는 핵협상의 타결로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리아, 이라크 문제에서도 이란의 협력 필요

□ 이스라엘의 방해, 미 공화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가 걸림돌

-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최대 동맹인 동시에 걸림돌인 이스라엘은 협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며 반발
- 이스라엘 및 자국 내 유대계의 로비에 지배되는 미 의회도 협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 우려
 - 상·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내 강경파는 차기 정권을 차지하면 핵협상을 원천 폐기하겠다고 선언, 미국의 협상 비준에 난항 예상
- 이란과 적대관계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협상에 불만을 품고 핵개발 가능성을 암시, 미국은 대처에 고심 중

4. 시사점

□ 이란의 국제 원유시장 복귀로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예상

- 이란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1,570억 배럴(2013년)로 세계 4위 규모이나,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11년 436만 배럴에서 2014년 285만 배럴로, 일일 원유 수출량도 2011년 250만 배럴에서 2014년 127만 배럴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

- 핵협상의 최종 타결시 이란의 원유생산은 점차 정상 복구될 전망이다이며, 현재 이란 해안의 부유저장고에 비축된 원유량은 3,0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
 - 오랜 제재로 원유 생산시설의 유지보수 및 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2011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, 제재 해제시 비축량부터 먼저 수출할 것으로 예상
- 현재 세계 원유시장은 일일 200만 배럴 수준의 초과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, 이란의 국제 원유시장 복귀는 원유 공급과잉 상황을 심화시켜 국제유가 하락세를 지속시킬 전망이다

□ 건설업계, 이란 시장 재진출 준비 필요

- 1975년 첫 진출 이후 우리나라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2010년까지 국내 건설업계는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 :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
 -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2010년 이후 신규수주는 사실상 전면 중단

< 표 2 >

이란의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

(단위: 억 달러)

| 연도별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금액규모 | 314 | 289 | 268 | 244 | 299 |

* 2013~14년은 추정치, 2015년은 전망치.

자료: 해외건설협회.

- 우리 기업들은 이란이 야심차게 추진한 South Pars 가스전 공사의 주요 부분을 수주한 경험을 살려, 세계 4위의 해외건설 발주국인 이란 시장에서의 재진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
 - 이란 건설시장은 에너지 관련 플랜트에 편중된 여타 중동 산유국들과 달리 석유·가스 관련 프로젝트 외에도 도로, 철도·지하철, 공항, 항만 등의 토목공사와 주택, 빌딩, 호텔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발주될 수 있는 잠재력 보유

- 다만,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어 향후 재진출에 앞서 이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필요
- 우리 기업들의 철수 후 이란 건설시장에 대거 진출한 중국, 인도 건설기업들과의 가격경쟁도 향후 극복해야 할 장애물

< 표 3 > 우리 기업의 이란 South Pars 가스전 개발 공사 수주내역

(단위: 백만 달러)

| 업 체 | 공사명 | 발주처 | 공사금액 | 착공일 | 준공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GS건설 | 9-10단계 | 이란국영석유회사 | 936 | 2003.1.1 | 2012.1.23 |
| | 6-8단계 (탈황, 유황회수설비) | Pars석유가스공사 | 1,393 | 2009.11.15 | 2013.5.14 |
| 대림산업 | 6-8단계 | Petropars | 348 | 2003.6.1 | 2007.7.31 |
| | 12단계 (패키지 2) | Petropars | 612 | 2009.12.1 | 2013.3.31 |
| 현대건설 | 2-3단계 (육상설치 공사) | Total South Pars | 1,015 | 1999.3.30 | 2002.6.30 |
| | 4-5단계 | Agipiran Pars | 1,623 | 2002.3.1 | 2005.2.28 |
| 현대중공업 |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| Total South Pars | 105 | 1999.7.29 | 2001.4.30 |
| 합 계 | | | 6,034 | | |

자료: 해외건설협회.

| | |
|-----|-----------|
| 확인자 | 소 장 임 병 갑 |
| 작성자 | 팀 장 오 경 일 |

< 참고자료 1 >

2013.11월 핵개발 잠정 동결협상의 주요 합의사항

- 1)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**5%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**하며, 핵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**20%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전면 중단**함.
- 2)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의 **1/2를 5% 이하로 희석**시키고 나머지 **1/2를 우라늄 산화물로 전환**하며, 우라늄 농축을 위한 **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**.
(단,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시설은 유지 가능)
- 3) 이란은 2014년 말 가동 개시 예정이던 **Arak 중수로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**함.
- 동 중수로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, 서방 국가들은 동 중수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음.
- 4) 이란은 **IAEA에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,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및 우라늄 광산에 대한 사찰을 허용**함.

상기 합의에 따라 미국·EU가 시행 중인 제재완화의 핵심 내용

- 1) 국외에 예치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중 일부(42억 달러)에 대한 동결을 8차례에 걸쳐 해제 ⇨ 협상기한 연장 후 28억 달러 추가 해제
- 2) 석유화학제품 · 귀금속 · 자동차 · 항공부품 등의 무역거래, 해외에 거주 중인 이란 유학생에 대한 송금 허용
- 3)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적보험 제공 금지 해제

< 참고자료 2 >

UN의 對이란 경제제재 결의안 연표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|
| <p>2006년 12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UN 안보리 결의안 1737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란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작업 중단, 국제원자력기구(IAEA)에의 협조 요구 - 對이란 핵개발 관련 물질·기술 금수조치 - 이란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 관련 주요인사 12명, 10개 기업의 해외자산 동결조치 (기업은 별도의 상업적 제재조치 추가) |
| <p>2007년 3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UN 안보리 결의안 1747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및 금융대출 제한 - 이란의 해외자산에 동결조치 대상에 13개 기업 추가 (이란 핵개발 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기업들) |
| <p>2008년 3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UN 안보리 결의안 1803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대상 확대 -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의 對 이란 수출 금지 -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들의 활동 감시, 이란 국적 선박·항공기 조사,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자국 내 활동 감시 등 촉구 |
| <p>2008년 9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UN 안보리 결의안 1835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앞서의 對이란 결의안(1696호, 1737호, 1747호, 1803호) 재확인 |
| <p>2010년 6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UN 안보리 결의안 1929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란의 미사일 개발 금지 - 對이란 전차, 전투기, 헬리콥터 등 무기 수출 금지 -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여행 금지 -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영 해운회사의 해외자산 동결 - 회원국들에게 이란행 화물선 조사,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 선박의 입항 금지, 이란 은행들의 자국 내 지점 개설 금지 등 제재조치 동참 촉구 |
| <p>2011년 6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UN 안보리 결의안 1984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(panel of experts)의 위임 기간을 1년 연장 |
| <p>2012년 6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UN 안보리 결의안 2049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(panel of experts)의 위임 기간을 13개월 재연장 |

< 참고자료 3 >

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 핵심 법령

| 구분 | 이란 제재법(ISA, 1993.10월) | 포괄적 이란제재법(CISADA, 2010.7월) |
|-------|--|--|
| 제재 대상 | ①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연 2,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② 이란의 대량살상무기(WMD), 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외국 개인 및 기관 | ①~②에 다음을 추가 : ③ 물품, 서비스, 기술 제공으로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④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|
| 제재 조치 | 다음의 6개 조항 중 2개 이상 부과 ① 미국수출입은행(USEXIM)의 대출, 차관,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 은행의 연 1,000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의 우선적 dealer 또는 정부기금 수탁자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| ①~⑥에 다음을 추가 : ⑦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⑧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|

EU의 2012년 對이란 핵심 제재조치

| 시점 | 주요 제재내용 |
|----|---|
| 1월 | - 이란과의 무기(arms) 교역 금지 - 이란과의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개발에 전용가능한 물자·기술 교역 금지 -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- 이란의 석유·가스 산업에 소요되는 핵심적 물자·기술 수출 금지 - 이란의 석유·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- 이란과의 귀금속(금, 보석류 등) 거래 금지 - 이란중앙은행의 EU내 자산 동결 - 이란계 은행들의 EU내 지점 개설 금지 |
| 3월 | - SWIFT(국제금융거래전산망)는 EU의 제재대상명단에 포함된 모든 이란계 은행들의 SWIFT 네트워크 접속 차단 |
| 7월 | - 역내 보험회사들의 對이란 운송보험 제공 금지 |